pwc 삼일회계법인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2026년 11월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반영)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Online Library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2017년 3월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되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거래소가 선정한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CoE(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미준수시 사유 설명) 방식으로 작성된다. 여기서 10가지 핵심원칙은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공통된 요소 중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포함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별표)

구분		핵심원칙
주주	주주의 권리	①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②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사회	이사회 기능	③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사회 구성	④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독립이사의 책임	⑤독립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이사 활동의 평가	⑥독립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 운영	⑦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	⑧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⑨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외부감사인	⑩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율공시 제도는 참여하는 회사 수가 저조하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기업의 작성 부담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관련 사항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로 신고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거래소는 정정신고를 요구 • 별표에 명기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이관) **2.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제29조제1호~제4호, 제35조)** • (제재대상)(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경우,(2) 공시항목 오기재, 누락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에 불응한 경우,(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제재수단) 1.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 공시불이행 벌점 제재(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10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15점 이상) 등의 후속조치 가능)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의무화 대상** • (2026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관련**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를 포함하여 신고(제7조의2제1항 등) * 기재사항에 거짓의 내용이나 중요사항 누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거래소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의2제2항)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 • 정정공시 요구와 관련한 중요사항 미기재*의 판단(제7조의2제3항)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미포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

또한,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2019년 4월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구분	주요 개정 내용
2017(최초 도입)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도입(자율 공시 원칙)
2019.04(의무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최초 제정
2020.03 개정	· 10개 핵심원칙과 세부원칙에 대한 구체적, 세분화된 작성 기준 제시 · 세부원칙 증가(23개>27개), 필수기재사항 증가(30개>60개)

2022.03 개정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기한 일원화(매년 5월 31일까지) ·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설(세부원칙 27개>28개) · 핵심지표 준수현황표에 전년도 대비 개선 여부 추가
2023.10 개정	· 세부원칙 추가 및 보완(배당 예측가능성 제고(1-4),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강화(1-2, 1-4, 2-1), 메자닌 등 자금조달 시 주주의견 수렴(2-3), 이사회 다양성 확대(4-2),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책임보험(7-1), 부적격 임원 선임 방지(4-4)) · 핵심지표 2개 변경 · 보고서 형식 개편: 원칙 '준수여부'(간략 기술) 및 정책 시행여부(○/X 기재)를 별도 항목으로 공시
2024.01 개정	·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항목에 주주제안을 통한 배당 추가(세부원칙 1-4)
2024.06개정	· 기타사항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 신설 · 세부원칙 2-1: '합계'를 '발행가능 주식전체'로 변경 · 세부원칙 4-2, 주석 65번 신설: 성별 다양성 확보 시 'O'로 표시 · 일부 표 형식 개편: 비율에 % 표시 추가
2025.02 개정	·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항목에서 분기배당 삭제(세부원칙 1-4)
2025.12 개정	· 핵심지표 4 주석 삭제 · 세부원칙 1-2: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항목 신설 · 세부원칙 1-4: '주주에 연 1회 통지 여부' 대상에 주주환원정책 관련 실시계획 추가 · 세부원칙 10-2: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에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 및 참석자 정보를 포함
2026.11 개정	· 세부원칙 1-1: 사업보고서 제출일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 추가 및 주주총회 2주 전 미공시 시 설명 · 세부원칙 1-2: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 추가 및 집중투표 대상 안건의 의결내역 기재 보완 · 세부원칙 1-4: 배당결정 사전 공시 여부(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 주주환원정책 변경 내역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일 추가 · 세부원칙 1-5: 최근 3개 사업연도 자기주식 취득·소각 현황, 미소각 사유 및 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여부 추가 · 세부원칙 2-3: 전체 주주 이익 고려 명시, 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 주주보호 정책 구체화 및 유상증자 관련 공시 추가 · 세부원칙 4-3: 집중투표제 및 소액주주 의견청취 관련 기재 구체화, 집중투표제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 공시 추가 · 세부원칙 7-1: 이사회 의사결정 시 전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 여부 추가 · 세부원칙 9-1: 감사위원 분리선출 여부 추가 · 핵심지표 준수현황의 비교 기준 변경 및 표현 정비(직전 보고서 기준 비교, 소집공고 기간 명료화, 사외이사→독립이사) · 기타 작성 기준 명료화 및 자구 수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CoE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가지 핵심원칙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제시된 원칙에 대해 CoE 방식에 따라 준수 여부와 그 근거를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재한다. 따라서 모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세부원칙 중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각 기업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준수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유)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미준수 사항에 관해 ① 기업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②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대신 채택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기업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 15가지를 추린 것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표이다. 준수 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명을 기재한다. 보고서 이용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기초로 기업간 지배구조 차이를 손쉽게 비교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1]

준수율[2]: %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직전 보고서) 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간(間) 전에 소집공고 실시[3]			
전자투표 실시[3]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3]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4]			

[1]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보고서 제출일 현재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준수여부를 판단하며, 보고서 본문에 판단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2] 공시대상기간 중 전체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준수항목의 비율

[3]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판단(핵심지표 1의 경우, 4주전이 아닌 4주간 전)

[4]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4]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Contact

- 02-709-0709
- kr_sgc@pwc.com